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9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8월 07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박순규, 김용석, 전병주,
오한아, 강동길, 이영실, 권순선,
김경영, 고병국, 여 명, 최 선,
이동현, 김정태, 이광호, 김화숙,
우형찬, 홍성룡, 김제리, 장인홍,
봉양순, 김소양, 오현정, 김상진,
이경선, 김기덕, 김춘례, 서윤기,
전석기, 장상기, 임종국 의원
(31명)

1. 제안이유

- 금년은 3·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,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
-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
-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(안 제31조10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
선순위자 1명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제1항제10호 ‘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’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총 비용 : 425,520천원(연 평균 85,104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세출	독립유공자 등 수도요금 감면 (제31조1항10호)	85,104	85,104	85,104	85,104	85,104	425,520

○ 비용 추계 전제

- 2019. 7월 말 현재 서울시내 독립유공자 지원 대상자는 1,970명(본인 : 10명, 선순위 유족 : 1,960명)으로 모두가 각각의 가구를 구성한다고 가정하고 향후 인원 증감 없는 것으로 전제
- 수도요금의 지원 범위는 독립유공자 1가구 당 월 사용량에서 10m³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제
- ※ 2018년 가정용 가구 당 평균 수도사용량은 월13.56m³이나,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1항2호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가구 당 월 사용량에서 10m³를 감면하고 있음
- 상수도 요금은 2019. 7월말 현재 m³당 360원이므로 그대로 인용하고 향후 요금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

○ 추계 방법

- 서울시상수도본부 자료 및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자료 준용

○ 비용 추계 산식

- 독립유공자 수(1,970명) × 월 감면액(3,600원) × 년 감면횟수(12월) = 85,104,000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 무 관 박경순

☎ 02-2180-7933

e-mail : kssunbi@seoul.go.kr